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(2025년 2월 졸업대상자)

「학사학위취득의 유예」와 관련하여,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1. 학사학위취득유예 : <u>정규 8학기 이상 등록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)</u> 하고, 학칙이 정하는 <u>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</u>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
- 2. 유예신청 자격
 - 가.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(4년제 기준)
 - 나.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[5년제(건축학전공,건축디자인전공)]
- 3. 유예신청 불가자
 - 가. 조기 졸업신청자
 - 나. 학·석사 연계 과정자
 - 다.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는 자
 - 라.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
- 4. 유예신청 기간 : 11.18.(월) 09:00 ~ 2025.1.17.(금) 24:00 (기한엄수)
- 5. 유예신청 방법 :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(학생클래스넷→졸업정보→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)
 ※ 단,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,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
 ※ 상기 유예신청 기간동안 유예신청/철회 등 수정 가능함
- 6. 유예신청 확정 :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<u>졸업에 필요한</u>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
- 7.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(*)
 - 가. 휴학 불가
 - 나. 타 대학 교류 불가
 - 다. 복수전공·부전공·융합전공·미세전공 신청 불가
 - 라. 학과진입,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(캠퍼스자율전공·미술대학 자율전공·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)
 - 마.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
 - 바. 재수강, 학점포기 불가(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)
 - 사.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
 - 아.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. 단,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
 - 자. 재학증명서, 수료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 - (*)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
 - (*) 유예확정된 자는 "휴학, 타 대학 교류, 복수/부/융합전공 신청, 학과진입 및 주전공 신청, 학부 주전공 신청, 재수강, 학점포기"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 불가함 (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, 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)
- 8. 유예시기 : 2025학년도 1학기

※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

구분 학생	2024-2학기			2025-1학기	
	'24년 11월 ~ '25년 1월	′25년 2월	'25년 2월말	('25년 3월)	2025-1학기
	유예신청	졸업사정결과	유예결과	학적	학사관리
김00	유예신청	햡	유예 확정	재학 (유예)	■ 휴학불가 ■ 타 대학교류 불가 ■ 복수·부·융합전공·미세전공 신청불가 ■ 주전공신청·변경 불가 ■ 학과진입신청 불가 ■ 재수강·학점포기 불가
박00	유예신청	불	유예불가	재학/수료	■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
000	유예미신청	합	졸업	졸업	■ 해당없음
정00	유예미신청	불	졸업불가	재학/수료	■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
강00	유예철회	불	유예불가	재학/수료	■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
최00	유예철회	합	졸업	졸업	■ 해당없음

*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 건에서 제외되므로,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·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끝.